

「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에 관한 규정(중소기업청고시, 제2011-1호)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6월 23일
중 소 기 업 청 장

「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제품 홍보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('96.6월 제정), 이후 현재까지 5차례 개정·운영 중이나, 일몰기한 도과(재검토 기한 '13.12.31)로 조속한 규정 정비 필요

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

3. 주요내용

- 존속기한 재설정과 더불어, 위원회 구성 간소화, 가점 기준 및 신청 양식 문의처 정보 등 현행화

현행	개정(안)	사유
○ 위원회 구성(제5조) - (위원장)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담당이사	○ 위원회 구성(제4조) - (위원장)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담당본부장	▪ 위원회 구성 및 선임 절차 간소화

- (위 원)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, 홍보기관, 기타 중기청장이 위촉하는 자	- (위 원)중소기업제품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(이하“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	
○ 제검토기한(제28조) - '13.12.31일까지 ○ 시행일(부칙 ①, ②) -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- 경과조치	○ 존속기한(부칙 제2조) - '16.12.31일까지 ○ 시행일(부칙 제1조) -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- <삭제>	▪ 일몰기한 도파로 3년 연장 ▪ 시행일 재설정
○ 홍보지원 대상 제품선정 가점 기준(별표1) - 마케팅우수중소기업(한국생산성본부 지정)	○ 홍보지원 대상 제품선정 가점 기준(별표1) - <삭제>	▪ '13.10월 제도 폐지로 가점기준 현행화
○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가신청서(별지 1, 2) - 신청기업 정보 영문표기, 유통센터 문의처 기존정보	○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가신청서(별지 1, 2) - 신청기업 정보 국문표기, 유통센터 문의처 현행화	▪ 문의처 현행화, 영문 외래어를 국문 표기 등

4. 의견제출

「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. 7.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공공구매판로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
공공구매판로과(☎ 042-481-4398, Fax 042-472-7932)